

수원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0나953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0나9535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0. 15 선고 2018가단10839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박현진, 박일섭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장현선

변론 종결 2022. 3. 23.

판결 선고 2022. 4. 1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0. 15. 선고 2018가단10839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9.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82,986,920원 및 그 중 79,308,252원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제1심 변론 종결일까지 연 6.8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986,920원과 그 중 79,308,252원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제1심 변론 종결일까지 연 6.829%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

원고는 2016. 9. 5. B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1) 2) 으로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B는 원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금 및 이자, 가지급한 법적 절차 비용 등 부대 채무도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가계일반자금	일억 원	2016. 9. 5.	2018. 3. 14.	대출실행일 기간별 시장 금리+2.365%	6.829%
--------	------	-------------	--------------	------------------------	--------

B는 2017. 12. 1.부터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B에 대하여 2018. 6. 18.을 기준으로 산출한 대출 잔액과 이자의 합계는 아래 표와 같다(이하 위와 같은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2016. 9. 5.	79,308,252	3,678,668	2017.11.26.	2018.6.17.	204	6.829
총합계(원)						
82,986,920						

나.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증여

한편 B는 2017. 9.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B가 2017. 9. 12.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준 것(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은 이 사건 대출채권을 가진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이 사건 증여가 B와 피고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 피고와 B의 공동적극재산이 피고에게 모두 귀속됨으로써 피고는 공동소극재산에 해당하는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도 상당한 재산상 이득을 얻게 되어 이 사건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것이 되는바,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채권의 가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대출채권의 가액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는 B와 피고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 B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이혼의 경위,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는 가액 등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당시 B의 이 사건 증여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17. 9. 12.을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은 이미 성립하여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대출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증거가 B와 피고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 이 사건 증거가 B와 피고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행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살펴 본다.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증거가 B와 피고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B가 2017. 9. 10.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재산분할 합의를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피고와 B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호협1594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2. 18. 이에 대한 확인을 받은 사실. 이후 이에 따른 B와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산분할 합의

- 이 사건 아파트 실거래가 금액 : 대략 350,000,000원~370,000,000원(2017. 9. 10.기준)
-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 금액 : 180,000,000원(D은행,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 토지담보 대출금액 : 100,000,000원(E조합, 채권최고액 : 130,000,000원)
- 기업은행 신용대출금액 : 20,000,000원

<합의내용>

- 실거래가 기준 대략 350,000,000원~370,000,000원(2017. 9. 10.기준)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금액(180,000,000원)을 피고가 상환 및 이자 납입을 한다.
- 토지 담보대출 금액(1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납입한다.
- 토지 담보대출 금액(100,000,000원)을 상환한다.
- 기업은행 대출금액 총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피고가 상환한다.
- 대출금액 및 이자를 제한 나머지 금액 대략 50,000,000원을 자녀(C)를 양육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증여한다.
- 이혼 후 매달 양육비 1,500,000원을 송금한다.

이에 의하면, B와 피고가 협의 이혼을 하면서 그와 관련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B가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증여가 포함된 이 사건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B의 무자력 여부

B가 이 사건 재산분할 무렵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제1심 2020. 5. 21.자 제2회 변론조서 참조).

나)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

(1)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의 산정

(가) 관련 법리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참조).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또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참조).

한편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그 변제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아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채무액만큼 분할대상 재산액이 외형상 증가하지만 그 수증의 경위를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기존의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재산분할의 공동재산 현황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7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와 피고의 2017. 9.경 공동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적극재산

㉞ 이 사건 아파트: 시가 380,000,000원³⁾ ㉡ 피고 소유의 세종시 I답 1,840m²(을 제2호증, 이하 '세종시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피고의 아버지 J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그 유지나 증식에 배우자인 B가 기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따라서 세종시 토지도 B와 피고의 공동재산으로서 이 사건 재산분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소극재산

㉞ D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180,000,000원

㉡ 중소기업은행(원고)에 대한 가계일반자금대출금채무: 100,000,000원⁴⁾ ㉡ E조합에 대한 가계일반자금대출금채무: 100,000,000원

㉡ F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1,250,000원

(2)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 6, 9 내지 1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B와 피고의 혼인 생활과 경제활동 및 이혼 경위 등

① 피고는 2001. 12. 16. 근로복지공단 재직 중인 B와 결혼식을 올리고, 2002. 2. 15.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K일자 딸 C을 출산하였다. B는 2007. 9월경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사하였다.

② B와 피고는 2003. 10. 10. 서울 구로구 L아파트 M호를 공동 명의로 매수하여 2003.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07. 10.경 300,000,000원에 이를

처분하였고, B는 그 무렵 위 매도대금의 일부를 투자하여 N노무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③ B는 2008. 10. 16. 이 사건 아파트를 256,500,000원에 단독 명의로 매수하여 2008. 11. 2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곳에서 피고 및 딸 C과 함께 생활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은 위 L아파트 처분대금과 O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마련하였다.

④ 피고는 2012. 5. 16. 아버지인 J로부터 세종시 토지를 증여받고, 2012. 5. 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B부터 E조합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리는 데 담보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9. 근저당권자 E조합 앞으로 세종시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⑤ B는 2014. 8.경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2016. 10.경부터 'H'이라는 상호의 반찬 배달사업을 하였다.

⑥ B는 혼인 기간 중에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정생활에 소홀함과 재산 관리나 직장문제 등의 단독 결정 등으로 피고와 자주 갈등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던 중 B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17. 9. 10.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를 하고, 2017. 12. 18.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며, 이후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⑦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2006. 1.경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2006. 11.경부터 2007. 9.경까지는 우체국금융개발원에서 근무하였고, 2010. 1.경부터 2018. 8.경까지는 프리랜서로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였는데, 피고의 소득금액은 2015년도 21,000,000원, 2016년도 43,000,000원, 2017년도 22,970,322원이다. 피고는 B와 이혼 이후 딸 C을 양육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위 자녀의 양육은 거의 대부분 피고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공동재산의 상황과 피고가 얻은 실질적인 재산가액 등

①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은 합계 380,000,000원(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이고, 소극재산이 합계 401,250,000원(= D은행 채무 180,000,000원 + 중소기업은행 채무(이 사건 대출채권) 100,000,000원 + E조합 채무 100,000,000원 + F은행 채무 21,250,000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재산분할 무렵의 B와 피고의 공동재산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21,250,000원(= 401,250,000원 - 380,000,000원) 초과하는 상황이었다.

② 위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만약 재산분할의 신청이 있었다면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며,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채무가 분할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B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 과정, B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된 채무의 액수를 공제한 만큼이 이 사건 재산분할에 따른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받음으로써 약 380,000,000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채무가 300,000,000원에 이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취득한 실질적인 재산가액은 80,000,000원(=380,000,000원 - 300,000,000원) 정도이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7. 9. 14.경 B에게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0원 중 원금 20,000,000원과 그 이자에 대한 변제 명목의 돈의 지급을(을 제15호증), 2018. 3. 19.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D은행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B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리금으로 180,496,257원의 변제를(을 제10호증), 2018. 4. 19. B의 E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리금으로 100,104,380원의 변제(을 제11호증)를 각 하였고, 위 2018. 3. 18.자 D은행에 대한 280,000,000원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추가로 부담한 채무액은 실질적으로 300,000,000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등 기타 사정

① ㉠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경위와 그 매수자금의 원천, ㉡ 혼인기간 동안 B와 피고의 직업 및 수입활동,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정도, ㉢ 혼인 파탄에 대한 B와 피고의 책임 정도, ㉣ 피고는 고정적인 직업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혼 이후 피고가 딸을 혼자서 양육하기로 한 점, ㉤ B는 약속했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고 B의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고, 이를 위하여 D은행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현재까지 부담하고

있는 점, ㉔ B의 채무는 대부분이 그의 단독 결정으로 진행한 사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㉕ 피고가 이혼 이후 미성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이전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실질 재산가액 80,000,000원 정도가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㉖ B와 피고의 이혼 이후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재산분할이 과다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참작할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기창

판사김문성

판사정승화

별지

- 1) 지연배상금률은 약정 이율에 연 3%를 가산한 금리이다.
- 2) 대출만료일의 경우, 최초 대출시 약정한 대출만기는 2017. 9. 5.이었으나, 2017. 9. 14. 원금 일부 변제를 하면서 대출기한이 2018. 3. 14.로 연장되었다.
- 3)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시가 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F은행 부동산 시세조회에서 B와 피고의 협의 이혼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2017.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380,000,000원이다(갑 제7호증).
- 4)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채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의 채무액을 80,000,000원으로 주장하나(원고의 2021. 9. 14.자 준비서면), 이 사건 대출채권 100,000,000원 중 원금

20,000,000원의 변제는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에 따라 이 사건 증여를 받은 이후인 2017. 9. 14.에 피고의 특유재산에서 출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갑 제2, 5호증, 을 제5(가지번호 포함), 15호증 참조],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채무액은 10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